《증보문헌비고》(직관고)에 반영된 조선봉건왕조시기 지방고을 관호의 승격과 강격에 대한 리해

리 명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학분야에서도 아직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김일성전집》 제32권 332폐지)

민족고전 《증보문헌비고》 직관고 18, 19(외관 2, 3)에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각이한 등급의 관호(크고작은 등급에 따라 부르는 고율이름)와 그에 따르는 고율장관들에 대한 자료가 기록되여있다. 그에 의하면 관호와 그에 해당한 매 고율 장관을 기록하면서 그 연혁과 승격과 강격 및 폐지와 복구과정을 밝히고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고을은 봉건적인 지방 통치의 기본단위였다. 봉건통치배들은 고을 을 각이한 등급으로 나누고 거기에 왕권의 대변자이며 옹호자인 고을원을 파견하여 중 앙집권적인 통치를 실시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고을은 등급에 따라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으로 구분되였 다. 그 구분기준은 일반적으로 산줄기나 강 하천 등 자연지리적조건과 함께 인구수, 경 지면적을 비롯한 경제조건, 운수조건 및 정 치군사적요충지로서의 지위 등이였다.

당시 고을관호는 구분이 모호하고 복잡하였으며 군, 현(부로부터 현에 따르는 고을행정단위의 총칭)정비사업이 완성되지 못하여 고을관호와 내용이 배리되는 현상까지 있었다.

실례로 경상도의 안동부와 의성부의 경우 판호는 부로서 같지만 의성부는 외관(고을 장관)이 없었던탓으로 백수십년간 안동부의 속부로 되여있었고 전라도의 고부군과 대산 군의 경우 관호는 군으로서 같지만 대산군 은 외관이 없었던탓으로 지군사단위인 고부 군에 매인 속군으로 되여있었다. 이처럼 관호는 같아도 외관의 유무에 따라 고을의 등급은 실지에 있어서 판이한 차이를 가지고있었다. 지어 외관의 유무에 따라 관호상 높은 급의 고을이 관호상 낮은 급의 고을밑에 소속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실태는 중앙집권적인 봉건통치실 현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으며 그에 대한 정비를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조선봉건왕조수립후 봉건통치배들은 중 앙집권적인 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보 다도 고을의 승격, 강격을 리용하여 군, 현 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조선봉건왕조는 복잡하게 얽힌 고을행정 단위로 비교적 통일적인 군, 현제도를 실시 하였다.

이 시기 군, 현제도는 관호를 고착시키고 그에 해당한 외관을 파견하는 방향에서 정 비되였는데 고을들의 부단한 승격, 강격을 동반하였다.

1401년에 관제를 개정하여 많은 관직들을 축소하였으며(《증보문헌비고》권 237, 직관고 24, 록봉) 1406년 7월에는 여러가지로 된지방행정통치단위들의 명칭을 고치였고 등급도 통일적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다.

1466년에 지군사를 군으로 개정하였다.(《증보문헌비고》권 231, 직관고 19, 외관 2, 군수)

1414년에 군, 현을 개정하였는데 그에 따라 일부 주, 부가 군으로 강격되고 일부 현이 군으로 승격되였다.(《증보문헌비고》권 231, 직관고 19, 외관 2, 군수)

조선봉건왕조초기에는 고을원들이 파견되여있지 않은 속현들이 상당한 정도로 남아있었으나 15세기말~16세기초에 와서는 고을원이 배치되지 않은 고을이 거의 없었다.

군, 현정비사업은 봉건국가의 시책으로

시작되였지만 쉽게 완성을 보지 못하고있다 가 1484년에 《경국대전》이 제정됨으로써 군, 현제도가 비로소 법적으로 고착되게 되였다.

조선봉건왕조초기에는 지방관찰사들이 고을장관의 임명권까지 가지고있는 형편이 였으나 국가의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없어졌다.

군, 현제도가 《경국대전》에 법제적으로 고착되였지만 《증보문헌비고》 직관고, 외관 2, 3을 보면 차이가 있다.

《경국대전》권 1, 리전, 외판직조에 의하면 함흥은 삼수, 문천, 고원, 단천과 함께 종 4품 군수조에 들어있으며 길주는 홍원, 리성, 명천과 함께 종6품 현감조에 들어있다.

그러나 《증보문헌비고》 직관고, 외관 2, 3을 보면 함흥이 부윤조에 있으며 길주는 목 사조에 있다. 이것은 함흥이 함흥부로, 길주 가 길주목으로 취급되였음을 시사해준다.

《경국대전》에 함흥이 군으로, 길주가 (작은)현으로 규정된것은 길주의 토착량반인리시애가 일으킨 함경도농민전쟁으로 인하여그 등급을 강격시킨 후과였다. 본래 함흥은 1416년에 부로 승격되였던것인데 함경도농민전쟁으로 하여 1476년에 군으로 강격되였다. 이것이 《경국대전》에 고착되였는데 그후 1509년 부로 승격되였던것인데 역시함경도농민전쟁으로 하여 1469년에 현으로 강격되였다. 이것이 《경국대전》에 고착되였는데 그후 1512년에 승격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을의 승격, 강격이라는 공간을 부단히 리용하였던것이다.

이와 같이 《경국대전》에 반영된 고을의 등급과 《증보문헌비고》 직관고, 외관 2, 3에 기록된 고을의 등급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경국대전》이 나온 이후 승격, 강격을 거치는 과정에 그 등급이 올라 가는 경향을 보이였다.

내섬시 첨정 성혼은 《혹 작은 현의 땅으

로 주를 삼고 큰 현의 땅으로 현을 삼습니다. 처음부터 제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인부를 징발하거나 조세를 거두어들일 때면 관리의 벼슬과 품계의 높고낮은데 따라 징수합니다. 이로 하여 땅이 작은 백성들은 그 고통을 이 길수가 없는데 이처럼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한적이 있었다.(《증보문헌비고》 권 233, 직 관고 20, 외관 4)

조선봉건왕조수립후 봉건통치배들은 중 앙집권적인 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으로 고을장관들의 승격, 강격공간을 리용 하여 군, 현에 대한 정비사업을 보다 강화 하였다.

국가기관의 등급이 곧 그 기관장관의 벼슬등급에 따라 규정된것처럼 지방통치단위로서 고을의 등급 역시 그 단위 장관의 벼슬등급에 의하여 규정되였다. 즉 부의 장관인 부윤은 종2품급, 대도호부의 장관인 대도호부와 목의 장관인 목사는 정3품급, 도호부의 장관인 도호부사는 종3품급, 군의 장관인 군수는 종4품급, 큰 현의 장관인 현령은 종5품급, 작은 현의 장관인 현감은 종6품급이였다.(《경국대전》권 1, 리전, 외관직)

각 고을의 장관들을 일명 원이라고 부르 기도 하다.

《증보문헌비고》권 231, 직관고 18, 외관 2와 《증보문헌비고》권 232, 직관고 19, 외관 3에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각 지방 고을 원들을 등급(부윤, 대도호부사, 목사, 도호부사, 군수, 헌령, 현감)별로, 도별로 수록하면서 승격과 강격, 폐지와 복구에 관하여 밝히고있다.

그에 의하면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고을장 관의 승격, 강격이 부단히 진행되였다는것 을 알수 있다.

충청도 충주목사는 1550년에 현감으로 강격되였다가 1568년에 다시 목사로 승격 되였으며 1613년에 현감으로 강격되였다가 1623년에 다시 승격되였다. 1628년에 현감 으로 강격되였다가 1637년에 다시 승격되 였으며 1647년에 현감으로 강격되였다가 1689년에 다시 승격되였다. 1729년에 현감으로 강격되였다가 1738년에 다시 승격되였고 1739년에 현감으로 강격되였다가 1747년에 다시 승격되였으며 1755년에 현감으로 강격되였다가 1764년에 다시 승격되었다. 1817년에 현으로 만들었다가 1826년에 복구하였다. 즉 9차례의 강격, 승격이 있었다. 여기서 현감으로 강격되였다는것은 고을의 등급이 현으로 떨어졌다는것을 의미하며 승격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고을장관의 승격, 강격은 부,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큰 현, 작은 현)의 등급에서 한등급씩 오르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였으나 때에 따라서 몇등급씩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해주목사는 1616년에 고을에서 큰 소송 사건이 있은것으로 하여 현감으로 강격되였 으며 광주목사는 1624년에 고을에서 《역 적》행위가 있은것으로 하여 현감으로 강격 되였다.

고을의 승격은 해당 고을이 봉건왕 및 그 친족들과 어떤 연고관계에 있거나 조정관리 의 고향일 때 또는 외적이 침입하였을 때 해 당 고을에서 어떤 공로를 세운 경우 등에 있 었다.

1592년에 임금의 행차가 있었다고 하여 의주목사를 의주부윤으로 승격시키였으며 임진왜란시기 고을의 백성들과 아전들중에 한명도 왜놈들에게 투항한 사람이 없다고 하여 창원도호부사를 대도호부사로 승격시 키였고 1469년에 신천이 환관 정동의 고향 이라고 하여 신천현감을 군수로 승격시키였다. 이외에도 이러저러한 리유로 고을의 승격현상이 있었으나 기본은 봉건왕이나 왕후등과의 연고관계로 승격된것이 많았다.

고을장관의 강격은 역적행위나 살인사건 이 있을 때 그리고 역적의 고향인 경우에 있 었다.

실례로 1812년 《역적》의 변란으로 안주 목사를 현감으로 강격시키였으며 1683년 살인사건이 있음으로 하여 원주목사를 현감 으로 강격시키였다가 1792년에 다시 목사 로 승격시키였는데 1728년에 《역적》의 태 를 묻은 고을이라 하여 또 현감으로 강격시 키였다. 이외에도 전패를 잃거나 봉건륜리 도덕에 위반되는 경우에 강격현상이 있었는 데 대체로《역적》이라는 리유로 강격된것이 많았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고을이 부단히 승격, 강격된것은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봉 건통치배들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한것이 였다.

고을의 등급은 해당 고을의 명예칭호였으 며 승격, 강격은 해당 고을주민들에 대한 상 벌수단이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통치배들은 고을의 승격, 강격을 계급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였으며 봉건적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고을의 승격, 강격과정이 결국에는 고을이 승격되는 방향으로 변천되였는데 그것은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봉건통치배들의 지방인민들에 대한 회유기만술책에 불과한것이였다.